

충청북도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'94. 4. 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상훈법시행령 제2조에서 공적심사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포상수여에 따른 공적심사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왔으나(충청북도포상조례 제10조 제2항)
- '93.12.27 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제4613호)에 따라 재구성된 인사위원회에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가 포함(외부인사 2명)되어 있어 상훈법시행령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
- 상훈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맞도록 소속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포상조례를 개정

□ 주요골자

- 공적심의 기관 변경 : 인사위원회 →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
-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
 -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
 -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,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.
 -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□ 참고자료

- 상훈법시행령 제2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공적심사위원회”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10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 1(공적심사위원회)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.

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$\frac{2}{3}$ 이상의 출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